

2023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총 27명

채용직급	채용직위 (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일
항공서기 (8급)	관제	24명	'24년 초
	정비	1명	
	조종	2명	

- * 임용 후 채용시험 및 신규자교육 성적 등을 기준으로 부서배치 예정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 * 채용직위별(직류별)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채용예정 직위(직류)별 담당업무

채용직위 (직류)	주요 담당 업무
관제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정비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
조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안전운영체계 검사 등 운항안전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4. 응시자격 (응시자격 인정기준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는 응시 가능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채용직위(직류)별 자격요건

채용직위 (직류)	자격요건
관제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 2. 「항공안전법」에 따른 관제분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보유자 3.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 ※ 항공안전법 및 국제기구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 자격기준에 따라 1~3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정비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조종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마. 기타 응시조건

- 자격증(면허증), 증명서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국내법령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격 및 증명에 한함

-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증,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예정일(24.1.6)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함

* 이 경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5.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 3과목(공통 2과목 : 항공법규, 영어 / 직류별 전공 1과목)

○ 항공법규(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 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이상 4개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등 중점 출제

○ 영어(8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 문법, 듣기, 독해 및 어휘 유형으로 출제

* 청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2, 3급 이상)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듣기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원서접수 시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직류별 전공과목(20문제, 객관식 사지선다)

채용직위 (직류)	출제과목	범위
관제	항공교통관제	항공교통 일반사항, 항공로 관제절차, 접근 관제절차, 공항교통 관제, 레이더접근 관제, 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
정비	항공정비일반	물리학, 항공역학, 항공기 도면, 항공기 중량 및 평형관리, 항공기 재료·공정·하드웨어, 항공기 세척과 부식 방지처리, 유체 라인과 체결기구, 수공구와 측정기기, 안전·지상취급과 서비스 작업, 검사개념과 기법, 인적요인 등 중점 출제
조종	비행이론	조종사의 자격, 항공기의 분류, 항공기의 구조와 시스템, 기초 비행 원리, 항공기 성능 등 중점 출제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을 득점한 자 중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함(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 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내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같을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채용 공고	원서 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공고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공고
'23.10.10(화) ~10.20(금)	'23.10.17(화) ~10.20(금)	'23.11.8 (수)	'23.12.2 (토)	'23.12.20 (수)	'23.12.29 (금)	'24.1.6(토) ~17일	'24.1.19 (금)

-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 정보)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세부 일정·장소는 추후 공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 및 시간 : '23.10.17(화) ~ 10.20(금)

○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접수처 : 채용직위(직류)별로 구분 접수

채용직위(직류)	접수기관	등기우편 접수 주소	연락처
관제	항공교통 본부	(우) 41059 /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1길 50-12, 항공교통본부 인사담당자 앞(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3-668-0216
정비	부산지방 항공청	(우) 467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42번길 54, 관리청사 2층 부산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974-2121
조종	서울지방 항공청	(우) 22382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서울지방항공청 인사담당자 앞(항공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32-740-2121

-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응시원서에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가,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자는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수정 불가)

- * 국토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일자리정보 → 직원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를 작성
- *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A4 크기의 행정용 전자수입인지)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3호 및 4호) 1부

④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사본 1부

- *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 증명서
- * 정비 : 항공정비사 자격증(구 항공공장정비사)
- * 조종 :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⑤ 가산점 대상자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한국사능력검정 3등급 이상 보유자 등
가산점 대상일 경우 관련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성에 한함)

- *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초본 등

⑦ 청각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청각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 예정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 예정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 3급이상 소지자	1급 : 과목별 만점의 5% 2급 : 과목별 만점의 4% 3급 : 과목별 만점의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대 상 자 >

◆ 아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지방보훈청(보훈 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4)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급 : 5%, 2급 : 4%, 3급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은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 가점 취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시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취득 예정('23.12.1)

10. 기타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 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국토교통부	항공서기(8급)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등

주요업무	○ (관제)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 (정비)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
	○ (조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안전운영체계 검사 등 운항안전업무

필요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

필요지식	○ (공통)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 (관제)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
	○ (정비) 항공기 정비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
	○ (조종) 항공기 운항 및 항공안전 관련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 (관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또는 3종에 해당하는 자		
	○ (정비)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구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 (조종)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가산점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 10명 이상에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 인원 4명 이상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한국사능력검정	과목별 만점의 5%, 4%, 3%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가능

<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3년 국토교통부 항공직렬(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인)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항공서기 ()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휴대전화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수입인지 가능)

※응시번호		응 시 표			항공8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항공서기 ()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인)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호														
2023년 월 일														
접수기관장 :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운영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 성명 : 한글 및 한자 성명 기재
 - ☐ 응시직급(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직위(직류)를 괄호안에 기재(관제, 정비, 조종 중 1개 기재)
 -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
 - * 응시표는 응시원서에 적힌 주소로 송부할 예정(등기 송부)
 - ☐ 주민등록번호 : XXXXXX-XXXXXX 형태로 기재
 -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본인이 직접 수신 및 통화할 수 있는 주소 및 번호 기재
 - ☐ 복수국적 : 응시원서 작성일 기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흑백사진 불가)
 - ☐ 정부수입인지
 - 우체국에서 5천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별도 붙임도 가능(A4 크기의 행정용 전자수입인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접수기관장 : 응시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 (관제) 항공교통본부장 / (정비) 부산지방항공청장 / (조종) 서울지방항공청장
- ※ 점선 하단 응시표의 응시직류, 성명,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여 제출

* 금번 채용은 채용요건인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므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제출 불필요(금지)

<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항공서기 ()	성명	
----------	--	----------	------------------------	----	--

※ 응시번호 : 미기재 / 응시분야 : 괄호 안에 관제, 정비, 조종 중 1개 기입

나. 응시자격

① 자격증 (모든 직류 작성)	자격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② 증명사항 (관계직류만 작성)	증명사항	등급(종)	유효기간(예정일)
	항공영어구술능력		
	항공신체검사증명		

※ ①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 정비 : 항공정비사 / 조종 :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중 1개

※ ② 관제직류만 작성

다. 가산점

한국사 능력검정	합격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취업보호 대상 등	구분	번호		관계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2023년 국토교통부 항공직렬(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격(면허), 복수국적 등

구 분	수 집 항 목
응시원서	○ 사진,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복수국적 등 - 본인확인, 진위여부 확인 등
이 력 서	○ 성명, 자격(면허)증 및 증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취업보호대상자 등 - 자격 및 가산점 등의 진위여부 확인 등
시험부정행위 관련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함,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
기타	○ 병역사항, 청각장애인 증명서 등 - 자격, 진위여부 확인 등

◆ (보유·이용기간 및 제3자 제공) 수집자료는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자격(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023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응시자 성명 :

☐ 응시자 생년월일 :

☐ 응시직렬(직류) : 항공8급()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자격증, 가산점, 국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
등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3. . .

동의인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